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투자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18. 2.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위기상황분석 방법 개선 필요

한화투자증권 내규인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위기상황분석(Stress-Test)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상황 대비지침」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2015년 이후 사업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위기상황 대비지침」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고, 위기상황분석시 매입보장약정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위기상황에 대한 가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위기상황분석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험관리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채무보증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채무보증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한도(거래종류별, 거래상대방별, 부서별 등)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전·후 거래에 따른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험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한도 설정 주체만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PF 위험관리지침」외에는 계약체결 후 위험관리기준이 없으므로 채무보증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3)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 정비 필요

한화투자증권 내규인 「위험관리규정」에서 한도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험관리규정」의 하위규정인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에서는 위험관리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거래담당자의 경우 현업부서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한도 종류와 무관하게 한도 초과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관리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규정시행세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